

서울특별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05. 2. .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I. 제 안 경 위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 제653호
3. 제출일자 : 2005. 2. 4
4. 회부일자 : 2005. 2. 7

II.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설에 간이매점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동 간이매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의계약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 (2001. 7. 16 제정)에 의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과의 형평성 유지
- 사용료등 감면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를 「후원하는 행사」 까지로 확대하여 신축성을 기함.

Ⅲ. 개정조례안 주요 추진경위

□ 매점현황 및 설치배경

- 매점현황 : 113개소(간이매점 88, 보훈매점 15, 스낵카 10)
- 매점설치 배경

간이매점 - 88개소(시가 제작설치한 공유재산)

- 1989년 한강시민공원내 노점상 정비계획(시장방침 제1290호, 89. 7. 24)에 따라 당초 426개소의 노점상을 일제 정비하면서 그중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174명을 선정 간이매점 설치하여 운영토록 함.
- 2002년 월드컵대비 간이매점 시설물정비 및 관리개선계획(시장방침 제708호, 99. 7. 27)에 따라 88개소로 축소조정(2000. 6. 1이후 2인 1조로 공동운영)하고, 시장방침으로 매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실상 연장계약을 하여 현재에 이룸.

보훈매점 - 15개소(사유시설물)

- 한강시민공원내 편익 시설설치 및 위탁관리계약(시장방침 제198호, 1986. 11. 15)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의 사기진작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987. 8. 27. 한국보훈복지공단에 보훈매점 13개소 설치 허가
- 1988. 3. 22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자회사인 창훈실업(주)에 양도된 후, 1988. 7. 7 2개소 추가 설치
- 1989. 3. 31 거한개발(주)로 양도되어 현재에 이룸

스 넥 카 - 10개소(사유시설물)

- 1988. 9. 15. 한강시민공원내 이동음식점 설치계획(시장 방침, 1998. 6. 1)에 따라 버스를 식당차로 개조하여 9대(거한개발 3, 세모유람선 6)설치 허가
- 현재

{	거한개발 5대(90.12.30, 2대 추가 설치)
}	한리버랜드 5대(98. 9월, 1대 자진폐쇄) 운영중

□ 개정조례안 추진 경위

- 2000년 10월 서울시 종합감사결과 현재의 간이매점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시정추구에 따라
 - 2001년 「서울시 한강공원 매점관리조례(안)」을 마련하였으나, 내부검토(치수과)결과 별도 조례 제정보다는 현행 「서울시 한강공원시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재검토하게 되었고
- 2003. 11. 25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 2004년 7월 실국장 간담회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시장께 보고하여
 - 2004. 10. 20 개정조례(안)에 관한 시장방침(제657호)을 득하였고
- 2004. 11. 20 ~ 12. 10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

- 입법예고 결과 한강상인연합회대표(황석재), 한강상인부녀회 대표(성덕임), 현 간이매점 운영자 등 122명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지만
 - 1997년 수해로 인한 10개월간의 영업중단기간 및 2000. 6. 1, 2인 1조 구조조정(174개소→88개소)으로 인한 2004. 12. 31기준 손실분 4년 6개월의 기간과
 -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 6년 5개월간의 유예기간 등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 2015. 12. 31까지 기한 연장 요구
- 서울시에서는 기간연장 만료기한을 2007. 12. 31이후로 연장하는 것은 공공재산관련 법규와 타 조례등과의 형평성 문제, 장기 임대애 따른 특혜 논란 등을 사유로 수용하지 않음

- 2004. 12.15 규제 개혁위원회 심의와 2005년 2월 1일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쳐 2월 4일 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임.

IV. 참 고 사 항

1.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2.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3. 기 타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나. 입법예고(2004.11.20 ~ 12.10) 결과: 의견별첨
 - 다.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규제사무 없음.

IV. 검토 의견(전문위원 : 임 령)

-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2005. 2. 4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53호로 2005. 2. 7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 현 조례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설에 「간이매점」을 추가하는 한편, 이 간이매점에 대하여는 2007. 12. 31까지 매년 수의계약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도상 영업 시설물」 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 사용료 등 감면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후원하는 행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 첫째, 「간이매점」 관련 규정의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먼저, 이 개정 조례에서 정의한 “이용시설”에 “간이매점”을 추가하여 신설(안 제2조제1항제7호)하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 이용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칙으로 “간이매점 운영자 선정에 대한 특례” 규정(부칙 제2호)을 두어, 간이매점은 매년 수의계약에 의해 운영하되 그 최종계약 만료기한을 2007. 12. 31까지로 한 집행부의 의도는 현재 본 간이매점과 유사형태인 “보도상 영업시설물” 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본 간이매점의 경우 매년 수해시 사실상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측면과 지금까지 구조조정 합병에 따라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어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비해 그간 상대적으로 영업환경이 좋지 못했던 점이 있는 반면,
- 이러한 사유로 계약 만료기한을 연장해 줄 경우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아울러, 그 조항 후미에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 이는 소송방지 목적으로 재판외에서 당사자간에 성립되어 있는 和議를 공증하는 효과와 집행명의를 얻고자 함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시 집행부에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 둘째,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입니다.
 -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후원하는 행사」까지로 확대하여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행사를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 준다는 측면에서 일응 타당성이 있는 면도 있지만,
 - 실제 적용시 과다적용으로 인한 세입감소는 물론 행사 주최단체등에서 서울시 후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우려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 이 조례와 유사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시 (2004. 5. 25)에도 사용료의 감면대상으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조항(제10조제1항제1호)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셋째, 지구수정등 기타 의견입니다.

- 우선, 부수적으로 별표1의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사용료 중 제5호 기타의 입장권 발매행사의 기준 및 사용료만 “(콘서트전시회 등)” 를 “(콘서트전시회 및 기타 공연)” 으로 개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 다음 지구수정 의견으로써 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에 “계약만료기간” 이라는 용어는 “계약만료기한” 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됩니다.

□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간이매점 임차인에게 기간의 제한 없이 매 1년 단위로 사실상 계약연장에서 오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식하면서
- 이와 유사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의 조례상 만료기한(2007. 12. 31)과 그 종기를 같이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논리가 될 수 있지만
- 형평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예:기간의 형평, 사실상 영업의 형평)이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사용료 감면대상을 「후원하는 행사」 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 조례와 유사한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 정 요 지

□ 개요

- 진정인 : 한강간이매점 상인 176명 및 800여 가족
 - 대표 : 한강상인연합회 황석재
- 접수일시 : 2005. 2. 7
- 우리위원회 회부 : 2005. 2. 14

□ 주요내용

- 요구사항
 - 계약만료일을 2017년12월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
- 사유
 - 형평성의 고려 : 보도상 가로매점과 한강간이매점은 1989년 동일한 시기와 조건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가로매점은 계약만료시점을 2001년7월16일에서 2007년12월31일로 하여 약6년5개월의 유예기간을 준수 사실이 있으므로 한강매점에도 동등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운영연장기간에 포함해야 함
 -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감소한 기간포함 : 2000년6월1일부터 2인1조 매점운영으로 1년에 6개월영업으로 2004년 12월까지 4년6개월을 연장기간에 포함해야함
 - 천재지변의 재산피해 고려 : 1991년 수해로 10개월의 영업중지기간을 연장기한에 포함해야함